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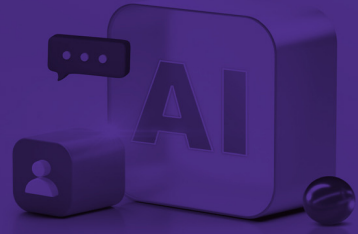
통권 194호 2025.07.03 AI 시리즈 3권

KOCCA**FOCUS**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과 시사점

KOCCA
FOCUS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과 시사점



박 만 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소 산업정책팀 선임연구원
msms@kocca.kr

SUMMARY

○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서의 AI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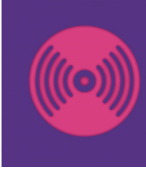
-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됨. 2025년 2,437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8,267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됨
- 생성형 AI 기술은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제작, 유통, 이용자 반응 예측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 직군이 점차 증가함

○ AI 생성물에 의한 사회적 문제와 대응

- AI 기술은 산업과 개인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문제와 관련 범죄, 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 AI 기술 관련 사회적 문제는 대표적으로 권리침해, 불법 유통, 디지털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이 있음
-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결과물에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 생성형 AI 표시 의무화에 대한 법안 및 정책은 범죄의 목적, 오용을 막기 위해 혹은 선거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국내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 및 제언

- 2026년 1월, 국내에서 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AI 생성물 표시제를 의무화 방안이 추진될 예정
- 콘텐츠 분야에서의 창작, 예술 등의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특정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예외 규정 필요
- 콘텐츠의 내용, 주제에 따라 AI 생성물 표시 기준 필요. 콘텐츠의 포맷, 내용이나 주제가 공익성, 공공성, 윤리성, 공정성, 사회적 이슈 등의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 AI 생성물 표시 필요
- 콘텐츠 형태 및 운영 정책에 따라 특성에 맞는 워터마크를 선택하여 창작물에 대한 보호, 이용자 경험 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적 도입 추진 필요
- 법적·제도적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도 표시 의무 적용 범위 및 표시 의무 부과 대상 등 세심한 검토 필요
- AI 기술 개발자, AI 플랫폼 및 제작 도구 이용자, 콘텐츠 이용자 AI 리터러시 교육 필요



CONTENTS

01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서의 AI 현황

1.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서비스
2.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서의 AI 시장

02

AI 생성물에 의한 사회적 문제와 대응

1. 생성형 AI로 인한 사회적 문제 증가
2. 해외 주요국의 생성형 AI 표시 의무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03

국내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 및 제언

1.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2. 향후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표시제 도입 의무화에 대한 쟁점 및 제언

01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서의 AI 현황

1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서비스

-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서비스에는 이미지 기반, 동영상 기반, 텍스트 기반, 오디오 기반, 멀티모달 기반 서비스가 있음

● 이미지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 이미지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는 AI 기술에 기반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수정 및 변환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함. 대표적으로 Open AI의 DALL-E, Midjourney, Adobe의 Firefly, Stability AI의 Stable Diffusion 등의 서비스가 존재함
- 이미지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의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 (장점) 고품질의 이미지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 (단점)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있음. 이용자가 원하는 품질 혹은 방향성에 대해 한계가 있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텍스트 설명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음

● 동영상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 동영상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는 영상을 변환 혹은 편집, 새로운 영상을 창작하여 생성해 주는 서비스임. 이용자가 직접 작성한 스크립트나 명령어에 따라 결과물이 자동으로 생성됨
- 대표적으로 OpenAI의 Sora, Stability AI의 Stable Video Diffusion 등의 서비스가 있음
 - ▮ Sora는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생성이 가능하며, 특히 프롬프트 스크립트를 자세히 입력하게 되면 그에 맞는 동영상이 생성됨. 특정한 움직임, 피사체와 배경의 구체성, 여러 등장인물 표현 등 시각적 디테일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며, 명령어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동영상 콘텐츠를 생성해 냄(아래 예시 참고)



자료: OpenAI 공식홈페이지¹⁾

[그림 1] Sora에서 처음 공개한 동영상 기반 생성형 AI 콘텐츠

1) <https://openai.com/index/video-generation-models-as-world-simulators/>

참고**OpenAI가 공개한 <밤의 도쿄 거리를 걷는 여성> 프롬프트 입력 명령어**

세련된 여성이 따뜻하게 빛나는 네온사인과 움직이는 도시 간판으로 가득한 도쿄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가죽 재킷, 긴 빨간색 드레스, 검은색 부츠를 착용하고 검은색 지갑을 들고 있습니다. 선글라스와 빨간 립스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고 자연스럽게 걷습니다. 길은 축축하고 반사되어 화려한 조명이 거울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많은 보행자가 걸어갑니다.(A stylish woman walks down a Tokyo street filled with warm glowing neon and animated city signage. She wears a black leather jacket, a long red dress, and black boots, and carries a black purse. She wears sunglasses and red lipstick. She walks confidently and casually. The street is damp and reflective, creating a mirror effect of the colorful lights. Many pedestrians walk about.)

●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 주어진 정보나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과 유사한 단계에서 언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을 의미함. 생성형 AI 뉴스, 문서 작성 및 요약, 시나리오, 시, 소설, 언어 번역 등과 같은 텍스트 관련 콘텐츠를 생성해 낼 수 있음. 대표적으로 OpenAI의 ChatGPT가 있음

● 오디오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목소리 혹은 음악 등을 학습하여 새로운 음성이나 오디오를 생성함. 오디오 콘텐츠, 내레이션, BGM 등에 활용되며 다양한 언어로 음성을 생성할 수 있음

● 멀티모달(Multi Modal)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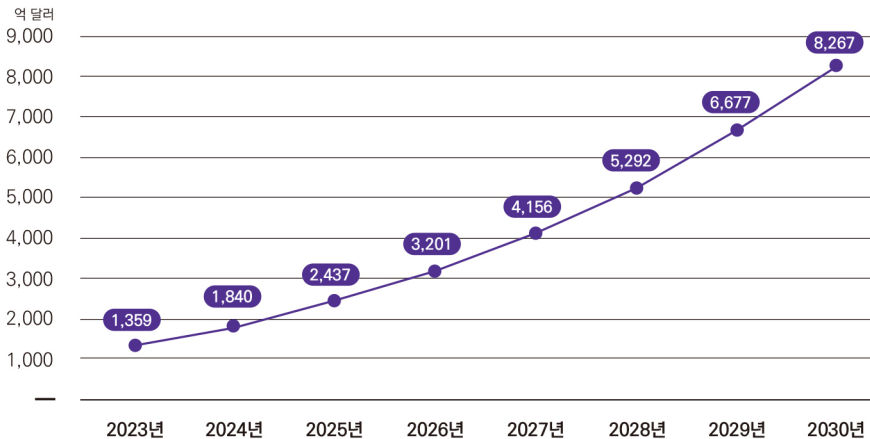
-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이해하는 AI 기술을 통해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등이 포함된 형태. 텍스트 외에도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 분석이 가능하며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분석하여 좀 더 심도 깊은 분석과 응답이 가능함
- 기존 AI 기술의 경우 한 가지 형태의 데이터만 처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멀티모달 기반 AI 기술의 경우 서로 다른 데이터 형태를 결합하여 상황 인식 능력, 정보 처리 수준 등이 기존 기술보다 더 향상 및 강화된 형태. 대표적으로 OpenAI의 GPT-4, Google의 Gemini 등이 해당됨

2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서의 AI 시장

-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 생성형 AI 기술은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제작, 유통, 이용자 반응 예측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 직군이 점차 증가함

● 글로벌 AI 시장 규모 전망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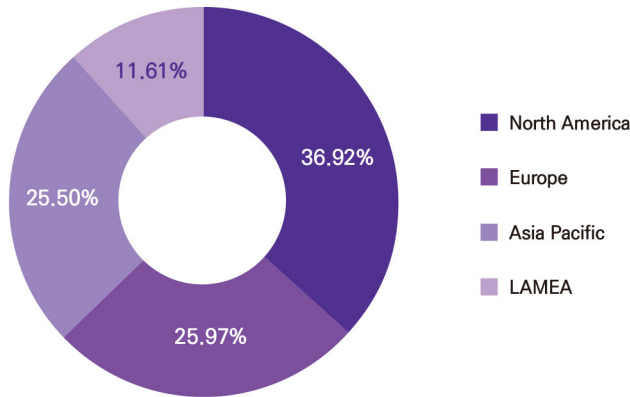
-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됨. 2025년 2,437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8,267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됨
 - ▮ AI 기술은 기존 산업과 경계를 허물고 여러 분야와 융합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함
 - ▮ (한국 AI 시장 규모) 2024년에는 247억 4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0.64%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 (캐나다 AI 시장 규모) 2024년에는 616억 9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34년에는 3,605억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9.31%로 예측됨
 - ▮ (독일 AI 시장 규모) 2024년에는 379억 6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0.46%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 (일본 AI 시장 규모) 2024년에는 305억 2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0.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자료: AI market size worldwide from 2020-2030(Thormundsson, 2024)

[그림 2] 글로벌 AI 시장 규모 전망

2) Thormundsson, Bergur(2024.6.20.), "AI market size worldwide from 2020-2030". Stati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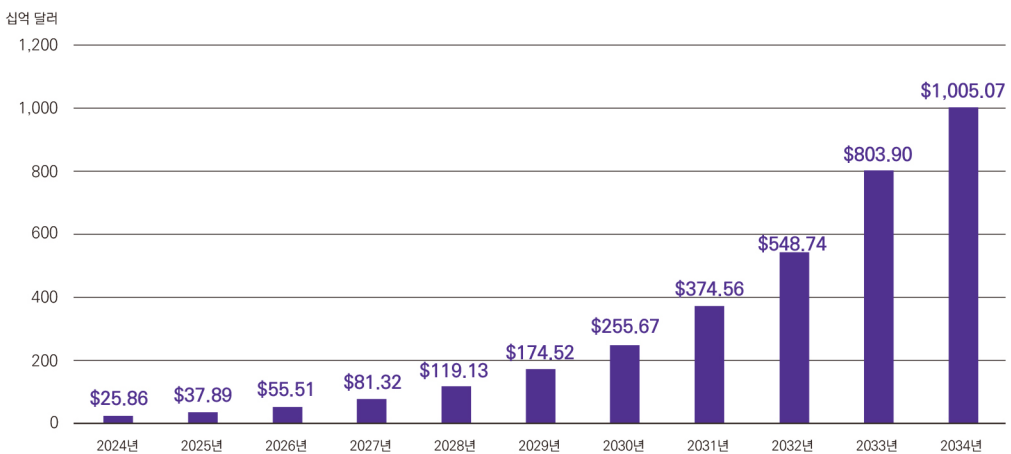
자료: <https://www.precedenceresearch.com/artificial-intelligence-market>

[그림 3] 대륙별 AI 시장 점유율

- 글로벌 AI 시장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36.9%로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유럽 25.9%, 아시아 25.5%로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이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최근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콘텐츠 산업에서도 생성형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증가하여 산업 구조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로 확산됨

- 손쉽고 빠르게 고해상도, 텍스트-이미지 변환, 텍스트-동영상 콘텐츠 생성 등을 위한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수요를 촉진함
 | 최근 산업 전반의 분야에서 자동화 워크플로우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인한 생성형 AI 기술 수요 확대
- 전 세계 생성 AI 시장 규모는 2024년 258억 6천만 달러에서 2034년에는 약 1조 50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생성형 AI 시장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44.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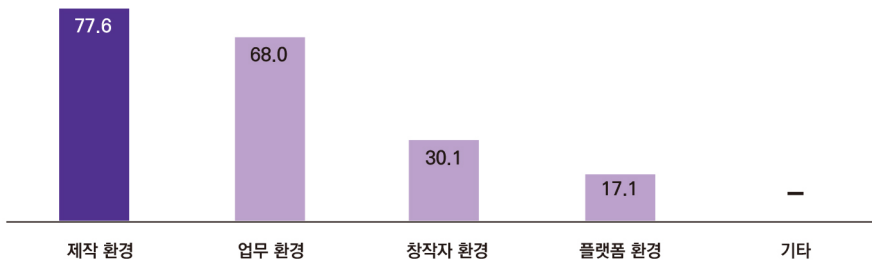


자료: <https://www.precedenceresearch.com/generative-ai-market>

[그림 4] 생성형 AI 글로벌 시장 규모

●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서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

- 기획 단계부터 제작, 유통, 이용자 반응 예측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³⁾
 - ▮ (방송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11.1%, 제작 단계에서 9.4%, 서비스 단계에서는 6.9% AI 기술 활용
 - ▮ (지상파 방송) 기획 단계 9.2%, 제작 단계 14.4%, 서비스 단계 18.4%에서 AI 기술 활용
 - ▮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 전문 채널(PP)) 기획 단계에서 38.8%, 제작 단계에서 10.5% AI 기술 활용
- 단순한 제작 지원을 넘어 방송영상콘텐츠의 생산 방식, 유통 경로, 소비 형태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킴
- 생성형 AI 기술 중 사업체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제작 환경이 77.6%로 제일 높음⁴⁾
 - ▮ 업무 환경 68%, 창작자 환경 30.1%, 플랫폼 환경 17.1% 순으로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시놉시스나 대본, 시나리오 작성, 음성 복원·합성 등 콘텐츠 제작을 직접 지원하는 기술에 AI 활용
 - ▮ 자료 탐색이나 검색·분석 시스템, 실시간 통번역, 코딩·프로그래밍 지원, 챗봇 운영, 추천 알고리즘 등의 기획, 일반 업무, 유통·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밸류체인을 위해 AI 기술이 활용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그림 5] 생성형 AI 도입 분야

-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작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⁵⁾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 직군이 점차 증가함⁶⁾

- 작가 46.8%, 기술 관련 종사자 45.1%, 후반 작업 종사자 38.3%, 미술 관련 직군 종사자 11.8%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르별로 AI 기술 활용 정도를 살펴보면, 교양 프로그램 46.2%, 예능 프로그램 36.4%, 드라마에서 28.3% 활용됨

● 콘텐츠 제작에서의 AI 기술 활용 분야⁷⁾

-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 영역별 특정 작업에 AI 서비스와 관련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음
- AI 기술은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콘텐츠 생성, 분석,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음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4). <방송산업의 AI·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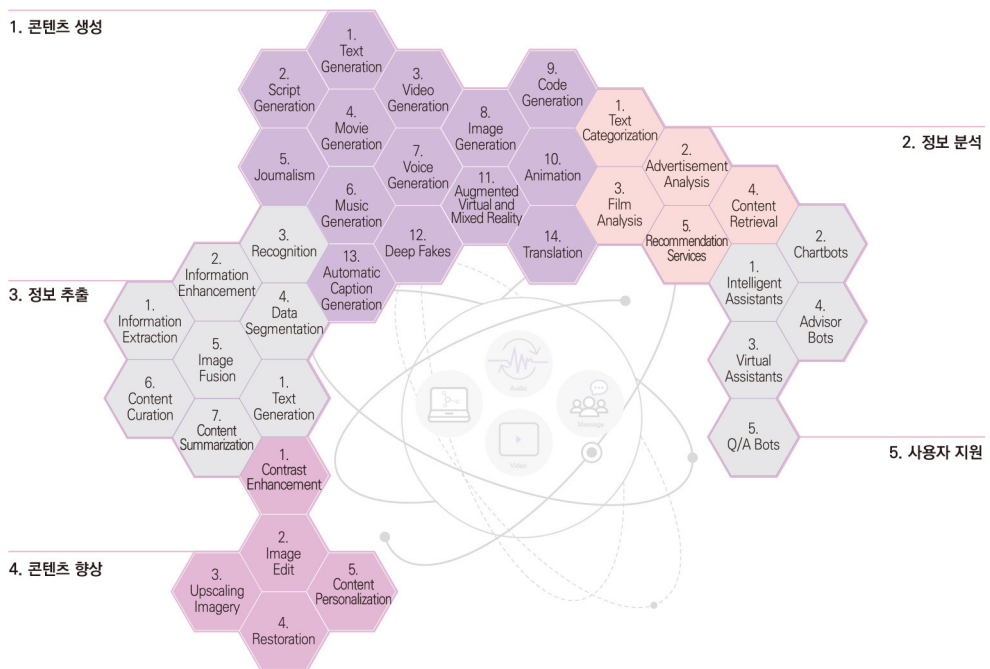
4)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2024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5)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조사연구>

6)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2024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4).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생성 AI 기반 서비스 분야>

- (콘텐츠 생성) 텍스트, 스크립트, 비디오, 영화, 저널리즘, 음악, 음성, 이미지, 코드, 애니메이션, 증강/가상현실 및 혼합현실, 딥페이크, 자동 캡션, 번역 등의 콘텐츠 생성 분야에서 시가 활용됨
- (정보 분석) 텍스트 분류, 광고 분석, 영상 분석, 콘텐츠 검색, 추천 서비스 등의 분야로 구분됨. 주로 정 분류, 평가, 검색하는데 활용되며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처리하고 추출하는데 시가 큰 역할을 함
- (정보 추출) 정보 향상, 인식, 데이터 세분화, 이미지 융합, 콘텐츠 큐레이션, 콘텐츠 요약 등의 분야로 구분됨. AI 기술을 활용하여 가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콘텐츠 향상 등의 작업을 위해 활용됨
- (콘텐츠 향상) 대비 향상, 이미지 편집, 이미지 업스케일링, 복원, 콘텐츠 개인화 등의 분야로 구분됨. 주로 콘텐츠의 품질과 매력을 향상시키는데 AI 기술이 활용됨
- (사용자 지원) 지능형 어시스턴트, 챗봇, 가상 어시스턴트, 어드바이저 봇, Q/A 봇 등의 분야로 구분됨. 사용자 경험을 전반적으로 향상 시키는데 AI 기술이 활용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4). <방송산업의 AI-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조사>

[그림 6] 콘텐츠 제작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분야

02 AI 생성물에 의한 사회적 문제와 대응

1 생성형 AI로 인한 사회적 문제 증가

- AI 기술은 산업과 개인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문제와 관련 범죄, 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 AI 기술 관련 사회적 문제는 대표적으로 권리침해, 불법 유해 콘텐츠 생성 유통, 디지털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이 있음
- AI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국 40%, 영국 40%, 캐나다 34%, 호주 31%, 스페인 31% 등의 순으로 집계됨

● AI 기술은 분야를 막론하고 산업을 넘어서 개인 일상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한 사건, 범죄, 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 생성형 AI로 생성된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등의 결과물은 출처를 식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한 정보 출처가 부재할 경우 정보 신뢰도에 리스크가 발생하고 여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AI 기술 관련 사회적 문제는 대표적으로 권리침해, 불법 유해 콘텐츠 생성 유통, 디지털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이 있음

- 생성형 AI 기술을 딥페이크, 딥보이스, 디지털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에 이용함
-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
- AI 학습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 부실 사례 발생
- AI로 허위정보를 생성하여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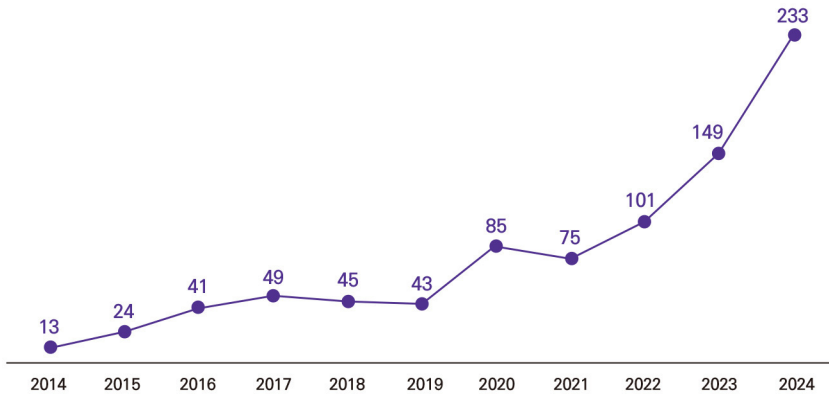
[표 1] AI 서비스 피해유형별 사례

피해 유형	주요 내용(예시)
권리침해(명예훼손, 저작권 및 개인정보 등 침해)	- 생성형 AI로 조작 영상 제작하여 타인 명예훼손 - AI 기반 음성인식 데이터 무단 수집 등 사생활 침해 -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 유해 콘텐츠 생성 및 유통(차별, 혐오 콘텐츠 등)	- AI 기반 이미지검색 서비스가 인종 차별적 콘텐츠 제시 - 생성형 AI로 불쾌, 혐오, 콘텐츠 제작 후 공유
디지털성범죄(편집, 합성, 가공물 제작 및 유포)	- AI 딥페이크로 불법 음란물 생성 및 신상공개 협박
기타 사이버 금융 범죄(피싱, 악성코드, 사이버사기)	- 생성형 AI 이용 악성코드 제작 및 유포, 딥보이스 이용 보이스피싱 - AI 아바타로 금융 거래, 유명인 사칭영상으로 투자자 모집 사기
재화 및 서비스(청약거부, 품질불량)	- AI 기반 대출심사 시스템의 편향적 판단으로 대출 거절 - AI 기반 안면인식 서비스의 기술적 오류 등 품질 불량
통신(중요사항 미고지, 요금불만)	- AI 기반 통신서비스 추천 상품 가입 후 요금 불만
콘텐츠(콘텐츠 품질 부실 및 불량)	- 생성형 AI가 학습 데이터 부족 등으로 저품질 콘텐츠 생성

자료: 방통위,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개설 보도자료(2024. 12. 20)

●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인공지능 관련 사고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AIID의 AI 관련 사고 수는 2014년 13건에서 2024년에는 233건까지 확연히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줌⁸⁾
- OECD에서 집계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AI 사고 발생 건수는 약 13만여 건으로 집계되며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사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⁹⁾
- AI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사건 및 사고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AI 기술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사고율 증가에 따른 우려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AI 기술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관련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 및 정책이 발표되고 있음



자료: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annual-reported-ai-incidents-controversies#reusetthis-work>

[그림 7] AI 기술 관련 사고 추이

● 2014년 인공지능 관련 사고 수가 13건에서 2024년에는 233건까지 확연히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줌

- AI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사건 및 사고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AI에 대한 인식과 태도¹⁰⁾

- AI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국 40%, 영국 40%, 캐나다 34%, 호주 31%, 스페인 31% 등의 순으로 높았음
- 반면 AI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인도 57%, 홍콩 41%, 아랍에미리트 4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미국(77%), 호주(87%), 캐나다(77%), 덴마크(77%), 영국(86%), 홍콩(84%) 등의 국가에서의 이용자 인식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콘텐츠의 경우 AI 생성물 표시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됨

8)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annual-reported-ai-incidents-controversies#reusetthis-work>

9) <https://www.lgresearch.ai/blog/view?seq=494>

10) https://business.yougov.com/content/51668-us-media-attitudes-to-ai-report?utm_medium=advertising&utm_source=Industry-Dive&utm_campaign=ADV-2025-02-US-media-attitudes-to-AI-report

[표 2] 국가별 AI에 대한 인식

국가	부정적 감정(인식): 걱정, 염려 등	긍정적 감정(인식): 낙관적, 기대감 등
미국	40%	13%
영국	40%	13%
캐나다	34%	19%
호주	31%	26%
스페인	31%	18%
스웨덴	30%	14%
프랑스	29%	13%
독일	25%	21%
덴마크	24%	14%
이탈리아	21%	22%
싱가포르	18%	28%
아랍에미리트	12%	44%
인도	11%	57%
인도네시아	11%	36%
홍콩	10%	41%
전체 평균	27%	24%

자료: YouGov report(2025)

- **국내 AI 기술을 악용하여 딥페이크 허위 영상을 제작 및 유포 등의 범죄가 2023년 168건에서 2024년 812건으로 약 5배 증가함¹¹⁾**
 - 생성형 AI 기술을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 범죄 증가 폭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함
 -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어진 영상 콘텐츠가 사람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인지 AI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인지 출처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거론됨
- **생성형 AI 기술 오용으로 인해 AI 데이터 침해 사고 2027년까지 4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¹²⁾**
 - 가트너는 생성형 AI 기술 오용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할 방법으로 AI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AI 거버넌스 위원회 설립, 데이터 보안 강화, 신뢰, 위험 및 보안관리 제품 투자, AI 투명성과 제어 강화 등을 제시
 - 글로벌 AI 표준화의 격차로 인해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강조함. 일관된 기준이 없다면 국가별, 지역별, 기업별로 따로 관리되기 때문임

1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공지능 생성물 악용한 딥페이크-가짜뉴스 막는다!” 보도자료(2025. 4. 8)

12) <https://www.itworld.co.kr/article/3826475/2027eb%85%84%ea%b9%8c%ec%a7%80-ai-%eb%8d%b0%ec%9d%b4%ed%84%b0-%ec%b9%a8%ed%95%b4-40%eb%8a%94-%ec%83%9d%ec%84%b1%ed%98%95-ai-%ec%98%a4%ec%9a%9%ec%9d%b4-%ec%9b%90%ec%9d%b8-%ea%b0%80.html>

2 해외 주요국의 생성형 AI 표시 의무화 추진 현황¹³⁾¹⁴⁾¹⁵⁾¹⁶⁾¹⁷⁾ 및 시사점

-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및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안 및 정책적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결과물에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 생성형 AI 표시 의무화에 대한 법안 및 정책은 범죄의 목적, 오용을 막기 위해 혹은 선거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 및 오정보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국내외 법안 및 정책적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AI 기술력이 좋아짐에 따라 위조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용이함.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허위정보 제작, 동의하지 않은 공인 혹은 유명인, 일반인의 목소리를 만들어내 도용당한 사람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에도 직결됨
 - 딥페이크 기술은 고인이 된 사람들을 재현하거나 위험한 촬영 장면을 제작하는 등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짜뉴스, 여론 선동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 유명인 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2024년 5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EU AI Act)을 제정하여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규정을 도입함**
 -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을 통해 AI 대한 정보 제공 및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함
 - AI 시스템 및 플랫폼을 공급하는 회사, AI 시스템 및 플랫폼 이용자, 유통 및 배포하는 모든 주체에 적용됨
 - (AI 시스템 및 플랫폼 공급 회사) 동영상, 오디오, 이미지, 텍스트 등 AI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창작할 경우 AI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생성되었음을 표시해야 함. 또한 AI 이용 콘텐츠 판독 기계가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 지침이 있음. 예를 들어 워터마크, 메타 데이터 삽입, 출처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이 대표적인
 - (AI 시스템 및 플랫폼 이용자)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AI 기술이 활용되어 만들어진 인위적인 콘텐츠의 경우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다만 창작, 예술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범죄나 악용 등에 쓰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음
- **유럽연합(EU)은 2023년 8월부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의 경우 AI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함**
 - 디지털서비스법은 초기 대형 온라인 플랫폼 혹은 검색엔진 서비스 사업자에게 적용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음

13) 시청자미디어재단. (2025). <딥페이크 규제 '주요 국가별 정책 및 법적 현황'>
 1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4). <THE AI REPORT 미국의 인공지능(AI) 정책 전략 현황과 변화 방향>
 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 <딥페이크 관련 국내외 규제 현황 및 분석>
 1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4).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 거버넌스 현황 및 시사점>
 17)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4). <인공지능(AI) 규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및 시사점>

- 디지털 서비스법 제35조에서는 딥페이크 동영상, 이미지, 오디오의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함
 - 서비스 이용자가 인공적으로 생성된 콘텐츠임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함
 - 또한 이용자가 직접 딥페이크 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미국은 연방 및 주에 따라서 다양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별 AI 생성물 표시에 대한 의무를 요구함**
 - (캘리포니아) 생성형 AI 제공자에게 AI 생성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뉴멕시코) 선거에서 딥페이크 활용 시 AI 생성 여부를 명시할 의무 부과. 동영상, 이미지, 음성 각각에 대해 명확히 식별 기준을 제시해야 함
 - (뉴욕) 정치적으로 활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AI 콘텐츠의 경우 AI 기술 활용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오하이오)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 내에 워터마크를 부착해야하고, 범죄 목적을 가진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중국은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어 확산되는 것에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서비스 딥페이크관리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을 제정함**
 - 중국은 딥페이크 기술의 오용을 막고 사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명확하고 강화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생성 및 유통 과정에서 국가 및 사회 전반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텍스트, 동영상, 오디오 등의 콘텐츠에 대해 AI 기술이 쓰였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식별 표시를 부착해야 함
- **스페인 정부는 시로 생성된 콘텐츠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는 기업에 벌금 부과**
 - 스페인 정부가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하여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킴
 - 정부는 고위험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AI법(EU AI Act)의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 밝힘
 - AI 기술은 인간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AI 기술을 악용하여 잘못된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 **영국은 2024년 7월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물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의 의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음**
 - 유권자들도 이에 동의하여 딥페이크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창작된 콘텐츠는 가상정보임을 표시해야하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법안이나 정책까지 이루어지지 않음
- **해외 주요 국가의 생성형 AI 표시 의무화에 대한 시사점**
 -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결과물에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의 목적, 오용을 막기 위해 혹은 선거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EU AI Act)의 경우 창작, 예술 등의 전문 특정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예외 규정이 있음
- 해외 주요 국가의 생성형 AI 표시 의무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예외 규정, 범위를 설정하고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줌. 향후 시행될 국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에서도 생성형 AI 표시 의무에 관한 조항에서 표시 의무 적용 범위, 부과 대상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함

03 국내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 및 제언

1 국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에 관한 주요 쟁점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딥페이크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시행
- 콘텐츠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선거운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2026년 1월, 국내에서 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AI 생성물 표시제를 의무화 방안이 추진될 예정
-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도입되면 창작 활동 및 이용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큼

● 딥페이크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에 따른 주요 쟁점

- 딥페이크와 같은 AI 기술로 인해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콘텐츠에 AI 활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표시 의무’의 필요성이 대두됨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딥페이크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시행
 - 조항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배포·상영하거나 게시할 경우, 해당 정보가 AI 기술을 통해 생성된 것임을 누구나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함

「공직선거법」¹⁸⁾

[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성,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의3] (규칙 제45조의6 관련) <신설 2024.1.19.>에 따르면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 규칙을 제시함
 - (음향)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작과 끝부분에 음성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함
 - (이미지)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크기의 100분의 10 이상의 테두리 안에 배경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함
 - (영상)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크기의 100분의 10 이상의 테두리 안에 배경과 구분되도록 상시 표시하여야 함
 - 그 외 기타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18) 대한민국 법제처. (2023). <공직선거법 [법률 제19707호, 2023. 12. 28. 일부개정]>.

[표 3] 공직선거관리규칙의 딥페이크영상 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구분		내용
음향	표시사항	이 음향은 실체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표시방법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작과 끝부분에 음성으로 각각 표시한다. 이 경우 재생 시간이 5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5분마다 1회씩 전단의 표시를 추가하되 음향 중간에 적절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미지	표시사항	이 이미지는 실체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표시방법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크기의 100분의 10이상의 테두리 안에 배경과 구분되도록 표시한다. 이 경우 테두리 안에는 표시사항 이외에는 표시할 수 없으며, 음향을 포함한 경우 제1호의 표시를 추가하여야 한다(이하 제 3호에서 같다).
영상	표시사항	이 영상은 실체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표시방법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크기의 100분의 10이상의 테두리 안에 배경과 구분되도록 상시 표시한다.
기타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위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 선거 기간 중 딥페이크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 요소

- ▮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유권자 보호를 강화하며,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됨
- ▮ 딥페이크로 제작된 허위 영상이나 이미지로 인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많음
- ▮ 유권자들이 생성형 AI로 제작되어진 콘텐츠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투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 콘텐츠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선거운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있음
- ▮ 딥페이크 기술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유권자들이 더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함

○ 선거 기간 중 딥페이크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 요소

- ▮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창의성 저해 문제 제기
- ▮ 생성형 AI를 활용한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가 지나친 규제로 작용해 개인과 정치인의 표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로 인해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치적 표현이나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배경에는,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콘텐츠 내용이 실제인지 허위인지 사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빠르고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
- ▮ 혹여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신속하게 확산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임

● 콘텐츠 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예정에 따른 주요 쟁점

- 2026년 1월, 국내에서 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방송·영상·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AI 기술이 활용 될 경우 해당 콘텐츠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의무화 방안이 추진될 예정
 - ▮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방송·영상·미디어·콘텐츠 분야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님
 - ▮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허위 정보 및 딥페이크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표시 의무화가 방송·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다양한 쟁점이 대두되고 있음

- AI로 제작된 콘텐츠의 투명성 강화, 이용자 신뢰성 강화 등의 긍정적 영향 확대 장점
 - ▮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를 통해 사회적 악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점이 있음
- 콘텐츠 내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도입되면 창작 활동에 부정적 영향 우려
 - ▮ 방송, 영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은 기본적으로 창의력과 표현의 자유에 기반하는데, AI 생성물 표시가 법적·제도적으로 의무화되면 창작자들이 AI 활용에 부담을 느껴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 AI 기술을 통해 창작 효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AI 생성물 표시가 콘텐츠 이용자의 심리적 영향 문제로 지적
 - ▮ 콘텐츠 이용자가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표시 의무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AI 기반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수 있음
 - ▮ 최근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이 증가하고 있음.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활용한 각 장면마다 AI 생성물 표시 및 워터마크를 표시하게 되면 시청자들의 콘텐츠 집중도나 몰입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용자의 몰입과 감정 이입이 저해되어 콘텐츠 소비가 위축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콘텐츠 수용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몰입감과 감정 이입이 중요한 미디어 환경에서 AI 생성물 표시는 이용자 경험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¹⁹⁾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6호, 2025. 1. 21., 제정]

-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대한민국 법제처. (20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20676호, 2025. 1. 21., 제정, 시행 2026. 1. 22.]>.

2 콘텐츠 내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의무화에 관한 제언

- 콘텐츠 분야에서의 창작, 예술 등의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특정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예외 규정 필요
- 콘텐츠 형태 및 운영 정책에 따라 특성에 맞는 워터마크를 선택하여 창작물에 대한 보호, 이용자 경험 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적 도입 추진 필요
- 법적·제도적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도 표시 의무 적용 범위 및 표시 의무 부과 대상 등 세심한 검토 필요

● 콘텐츠 내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의무화에 관한 제언

- 콘텐츠 분야에서의 창작, 예술 등의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특정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예외 규정 필요
 - ▮ 콘텐츠 내 AI 생성물 표시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혼란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술적 창작 및 표현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 적용 필요
 - ▮ 콘텐츠의 창의성, 예술성 등의 작품의 품질, 유용성 등을 유지하며 콘텐츠 경험에 방해되지 않은 방식의 표시법 도입 필요
 - ▮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EU AI Act)에서는 창작, 예술 등의 특정 전문 분야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예외 규정이 있음
 - ▮ 콘텐츠 엔딩 크레딧 등에 생성형 AI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콘텐츠의 내용, 주제에 따라 AI 생성물 표시 기준 필요
 - ▮ 콘텐츠의 포맷, 내용이나 주제가 공익성, 공공성, 윤리성, 공정성, 사회적 이슈 등의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 AI 생성물 표시 필요
 - ▮ 사회적 이슈나 현안, 공중 보건, 재난, 위기, 선거 등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세부적 기준 마련 필요
- 콘텐츠 창작의 자유 보호와 산업 경쟁력 유지, 이용자 경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분야별, 콘텐츠 별 상황에 따라 인지/비인지 워터마크를 선택적 도입 필요
 - ▮ AI 기본법 제31조 3항에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워터마크는 이용자 시각을 기준으로 인지와 비인지 워터마크로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 인지와 비인지 워터마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콘텐츠 형태 및 운영 정책에 따라 특성에 맞는 워터마크를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창작물에 대한 보호, 이용자 경험 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표 4] 사람 인지 여부에 따른 워터마크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인지	장점	역제 효과	워터마크 표시로 인해 허가 없이 콘텐츠를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방지
		구현의 용이성	복잡한 알고리즘 기술 없이 쉽게 구현 가능
		즉각적 확인	워터마크를 탐지하기 위한 전문적 탐지 도구 없이 소유권과 진위 여부를 빠르게 식별 가능
	단점	미적 영향	콘텐츠의 시각적 품질을 저하시켜 이용자의 경험을 해칠 수 있음
		제거에 취약	워터마크가 표시된 부분을 자르거나 필터링, 오버레이 등을 통해 워터마크 제거 용이
	제한적 보안	특정 숨겨진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탐지나 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	
비인지	장점	미적 보존	콘텐츠의 원본을 유지하여 이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
		강화된 보안	자르기, 필터링, 오버레이, 압축, 형식 변환 등에 저항력이 강하며, 승인되지 않은 변경 사용 감지가 가능
	단점	복잡성 증가	신호 처리, 머신러닝 기술 등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
		탐지 도구 의존	추출과 검증에는 전문화된 소프트웨어가 필요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4). <인공지능(AI) 워터마크 기술 동향 보고서>

- 법적·제도적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도 표시 의무 적용 범위 및 표시 의무 부과 대상 등 세심한 검토 필요

 - ▮ 콘텐츠 제작 관련 다양한 직종과 장르, 세부 제작 단계에서 생성형 AI가 활용되고 있음. 따라서 AI 생성물 제작자에 대한 명확한 범위, 표기 의무에 대한 범위, 콘텐츠 유형(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에 따른 표기 방법 및 기준 등 구체화된 기준 정립이 필요
 - ▮ 표시 방법, 범위, 수준 등을 구체적인 설정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지나친 규제나 과도한 제약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함
-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AI 생성물 표시 도입 필요

 - ▮ 최근 AI 생성물로 인한 사회적 혼란,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문제, 명예훼손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은 필수적임
- AI 기술 개발자, AI 플랫폼 및 제작 도구 이용자, 콘텐츠 이용자 AI 리터러시 교육 필요

 -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경우 AI 시스템 제공자, AI 시스템 활용자의 경우 AI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AI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 AI 기술로 콘텐츠 제작, 배포로 인한 위험성과 기회에 대한 인식,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이해해야 함. 또한 콘텐츠 이용자들이 단순 정보 습득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정보의 진위 여부 판단, 편향성 인식, AI 알고리즘 작동 방식 등의 학습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관련 교육이 필요함
- 정책 입안과 시행 과정에서 콘텐츠 관련 제작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실적이며 유연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 무엇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과 실제 현장의 상황 전반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 필요
 - ▮ 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기술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함
 - ▮ AI 기본법 시행이 AI 기술 활용에 대한 균형잡힌 정책 설계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방송,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함